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 운영 안내

1. 교육과정 개요

- (교육대상) 보건업(병원 등)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 *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산업분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 (교육기간) 2026. 5. 18.(월) ~ 2026. 6. 12.(금)
- (교육방식) 온라인 교육
- (교육시간) 신규 총 25시간, 보수 총 10시간
- (교육내용) 산업보건의를 위한 법과 규정, 보건업의 주요 유해인자의 이해, 보건업의 직업성 질환과 보건관리, 보건관리의 응용과 심화
- (평가안내)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하고 학습평가 점수 60점 이상
 - * 총 50문제 (보수는 총 20문제)

2. 교육과정 신청방법

- (교육 사이트) oellearn.org
- (신청 방법) 교육사이트에서 바로 신청 및 납부 후 교육 진행
- (교육 비용) 신규 50만원, 보수 20만원
- (신청 문의) 사이트(www.oellearn.org)의 이용 가이드 참고

붙임

세부 교육프로그램(신규, 보수)

□ 신규교육(총 25시간)

Session 1. 산업보건의를 위한 법과 규정 (6시간)

강의명	강사	시간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최○○(○○병원)	60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최○○(○○병원)	60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최○○(○○병원)	60분
위험성평가의 이해	손○○(○○병원)	60분
특수건강진단의 이해	신○○(○○병원)	60분
작업환경측정의 이해	이○○(○○연구소)	60분

Session 2. 보건업의 주요 유해인자의 이해 (7시간)

강의명	강사	시간
병원체 노출	김○○(○○병원)	60분
화학적 유해인자	김○○(○○병원)	60분
교대근무와 야간작업	장○○(○○병원)	60분
밀폐공간	임○○(○○병원)	40분
피부질환과 손위생	민○○(○○병원)	40분
소음	임○○(○○병원)	40분
진동	임○○(○○병원)	40분
온열한랭 노출	채○○(○○센터)	40분
취약근로자(임신부)	류○○(○○의대)	40분

Session 3. 보건업의 직업성 질환과 보건관리 (9시간)

강의명	강사	시간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조치 (근골격계 유해인자 포함)	이○○(○○센터)	90분
직무스트레스 관리 (심리사회적 유해인자 포함)	김○○(○○병원)	90분
직장 내 괴롭힘(폭력)에 대한 개입	김○○(○○병원)	60분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병원)	60분
뇌심혈관계질환 위험도 평가	김○○(○○병원)	60분
업무적합성평가와 작업복귀	송○○(○○병원)	60분
감염병 예방조치	명○○(○○병원)	60분
방사선 종사자 노출 및 안전관리체계	민○○(○○병원)	60분

Session 4. 보건관리의 응용과 심화 (3시간)

강의명	강사	시간
산화에틸렌 노출시나리오와 대처	민○○(○○병원)	60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보호구	함○○(○○학교)	60분
산업보건전문가 윤리	송○○(○○학교)	60분

□ 보수교육(총 10시간)

강의명	강사	시간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최○○(○○병원)	60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최○○(○○병원)	60분
산재보상법의 이해	최○○(○○병원)	60분
소음	임○○(○○병원)	40분
진동	임○○(○○병원)	40분
밀폐공간	임○○(○○병원)	40분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조치 (근골격계 유해인자 포함)	이○○(○○센터)	90분
직무스트레스 관리 (심리사회적 유해인자 포함)	김○○(○○병원)	90분
방사선 종사자 노출 및 안전관리체계	민○○(○○병원)	60분
산업보건전문가 윤리	송○○(○○병원)	60분

참고1

산업보건직의 자격 지침('22.11.28. 시행)

1 지침 시달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산업보건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자격자가 부족하여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22.22)”을 시달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보건업**에서 여전히 부족을 호소
 - * ①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소속 의사도 산업보건직으로 위촉 가능, ②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직을 선임한 것으로 인정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은 지침변경으로 부족이 상당히 해소되었으나 보건업은 여전히 부족
- 이에 보건업의 경우 소속 의사를 산업보건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학과 전문의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지침 변경함

2 행정해석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직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기준	변경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전임으로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2. 임상학과 전문의 자격자로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3. (신설) 보건업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직을 자체 선임할 경우, 사업장 소속 임상학과 전문의로 직업환경의학 관련 학회가 실시하는 25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단 이 경우에는 연 10시간 이상 직업환경의학 관련 학회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보건분야 전문교육*에 참가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p>*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4조에 따른 전문화 교육</p>

3 적용지침

- 적용 시기: 지침 시달일부부터 별도 지침 변경 전까지 적용

참고2

회원가입 및 교육수강방법 안내

□ 이러닝 강의사이트

- www.oellearn.org
-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과 결제 후 수강가능

□ 수강신청안내

- <https://www.oellearn.org/OE/info/CourseApplicationGuide>

□ 문의사항

- 사이트(www.oellearn.org) 커뮤니티 메뉴 아래 <문의하기> 이용